P-75-2011

인화성 액체의 안전한 사용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김기영
- O 제 · 개정 경과
 - 2011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HSG 140, "The safe use and handling of flammable liquids", HSE, 1st Ed., 1996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-75-2011

인화성 액체의 안전한 사용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- (1)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적용한다. 특히, 회분식 및 소규모의 화학공정에 적용한다.
- (2) 산화에틸렌, 과산화물 및 급격한 분해반응, 중합반응 또는 자연발화 등이 일어나는 액체와 같이 특수한 예방조치를 필요로 하는 액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인화성 액체"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<별표 1>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를 말한다,
 - (나) "대체 (Substitution)"이라 함은 창고에서 위성도가 높은 위험물을 위험도가 보다 낮은 위험물로 대체하여 저장·취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인화성 액체의 위험성

- (1) 인화성 액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 위험은 화재·폭발에 대한 위험이다.
- (2) 화재·폭발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일어난다.

P-75-2011

- (가) 인화성 액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
- (나)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수
- (다) 인화성 액체를 사용·취급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및 복사열에 노출
- (라) 설비의 적절하지 못한 설계
- (마) 설비의 오작동
- (바) 부적절한 점화원 관리
- (사) 정전기 발생
- (아)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가열
- (자)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설비의 분해 및 폐기
- (3)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·폭발 사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.
 - (가) 인화성 액체의 이동할 때
 - (나) 인화성 액체를 분배하거나 옮겨 담을 때
 - (다) 공정에서 사용 시
 - (라) 폐기 시
 - (마) 연료 탱크를 비울 때
 - (바) 누출물 처리 시
- (4) 액체의 연소는 인화성 액체가 기화되어 그 증기에 점화될 때에만 일어나므로 인화 성 액체의 인화점, 자연발화온도, 점도, 폭발하한 및 폭발상한 등이 화재에 많을 영 향을 준다.
- (5) 인화성 액체의 점도는 누출 시에 비산속도에 영향을 준다.
- (6) 일반적으로 용제는 점도가 낮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펴져나가 액체의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기화되어 그 증기가 빠르게 확산되나, 페인트와 레진 등은 점도가 높아 누출되어도 증기가 생성되는 속도가 늦어 덜 위험하다.
- (7) 인화성 액체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점화원이 있으면 바로 화재·폭발을 일으키

P-75-2011

나, 인화성 액체가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되어 화재·폭발이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
- (8)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주위 환경도 위험요인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하므로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(9) 대부분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된 바닥, 핏트, 배수구 및 하수구 등에 모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점화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만일이러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 인화성 액체 쪽으로 확산되어 화재가 크게 번진다.
- (10) 인화성 액체를 먹거나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작업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.
- (11) 건강위험에 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참조한다.

5. 예방조치

5.1 대체

- (1) 가능한 한 인화점이 낮은 액체의 사용을 피하고, 인화성이 없거나 인화점이 높은 액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. 이때, 근로자 건강 및 주위 환경에 더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(2) 대체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5.2 격리

- (1)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사용·취급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카막이 등으로 격리시켜야 한다.
- (2) 또한 인화성 액체를 사용·취급하는 장소와 다른 종류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칸막이 등으로 격리시켜야 한다.
- (3)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 대피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P-75-2011

5.3 분배 및 옮겨 담기

- (1) 인화성 액체의 분배 및 옮겨 담기 작업은 액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,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,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(3)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시스템을 밀폐구조로 만드는 것인데, 밀폐구조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체의 누출 및 증기의 생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소형 안전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.
- (4) 소형 안전용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 및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- (가) 금속 또는 고강도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 사용(단,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은 보관할 인화성 액체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.)
 - (나)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 및 구조
 - (다) 충전 및 배출구는 스프링의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뚜껑(Cap)으로 밀봉 되는 구조
 - (라) 충전 및 배출구에 화염방지기 설치
 - (마) 배출구를 통한 분배용 호스 설치
 - (바) 정전기가 집적되지 않는 구조
- (5) 상부 전체가 열리도록 제작된 깡통 및 드럼은 인화성 액체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(6) 인화성 액체를 저장·취급하는 깡똥 및 드럼은 쉽게 열고 닿을 수 있어야 한다.
- (7) 인화성 액체를 저장·취급하는 모든 용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-68호 "화학 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"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5.4 배관 및 호스

(1) 밸브의 씰 및 플랜지 가스킷을 포함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 시스템의 재

P-75-2011

질은 취급하는 물질에 저항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관련된 코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- (2) 플라스틱 재질 등은 취급하는 유체의 순도 유지 등과 같은 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.
- (3) 배관시스템은 누출 가능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용접에 의한 연결방법을 사용한다.
- (4) 배관시스템은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과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액 체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배관을 트렌치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이 있거나 상호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같은 트렌치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.
- (6) 배관과 전선을 같은 트렌치 내에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.
- (7)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을 부식되지 않도록 배관 외부에 적절한 코팅을 하여야 한다. 이때, 플렌지 연결부위는 지하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.
- (8) 신축성이 있는 호스는 인입 연결구 및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.

5.5 보조설비

펌프, 모터 및 보조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5.6 차단밸브

- (1) 배관시스템에는 보수 및 사고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다음과 같은 부위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.
 - (가) 외부와 연결되는 부위
 - (나) 외부에서 창고로 배관이 들어오는 부위
 - (다) 각 작업이 행해지는 끝단 부위
- (3) 밸브는 흐름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.

P-75-2011

(4) 자동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에 닫히는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.

5.7 이송시스템

- (1) 인화성 액체는 원칙적으로 배관, 펌프, 밀폐 용기 등으로 구성된 밀폐시스템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
- (2) 액체 이송방법은 질소 등의 불활성 가스 압력 또는 진공흡입방식 등도 있다.
- (3) 인화성 액체를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이송해서는 안 된다.
- (4)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경우에는 압력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설치되어야 하며, 이송 후 불활성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.

5.8 공정지역

- (1) 공정지역 내에서는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전하여야 한다.
- (2) 인입배관은 가능한 한 용기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액체의 중력을 이용한 이송은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(4) 설비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배관은 사이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용기에는 과충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과충전 방지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, 액위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.
 - (가) 오버플로우
 - (나) 유량 제어설비
 - (다) 액위 제어설비 등
- (7) 공정지역에는 누출된 액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유제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공정설비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통기관의 끝단은 건물밖에 설치하

P-75-2011

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켜야 한다.

- (9) 통기관의 크기는 KOSHA GUIDE "통기설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을 참조하여 산 정한다.
- (10) 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KOSHA GUIDE "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을 참조한다.
- (11) 혼합, 충전, 코팅 및 세정 등의 작업은 자연 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격리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6. 점화원 종류 및 관리

6.1 점화원의 종류

- (1) 인화성 액체를 저장·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(2) 점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전등, 전기회로 및 전기설비
 - (나) 정전기
 - (다) 마찰 또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차량
 - (라) 열 표면
 - (마) 용접 및 절단 불꽃과 같은 나화
 - (바) 흡연 등

6.2 전기설비

- (1)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는 지역은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079-10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(2) 가스폭발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지역에 적합한 방폭설비등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P-75-2011

- (3) 방폭전기설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가스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한 방폭전기설비는 다음과 같다.

(가) 0종 장소 : 본질안전방폭구조(ia)

(나) 1종 장소 : 본질안전방폭구조(ia, ib)

내압방폭구조(d)

안전증 방폭구조(e)

압력방폭구조(p)

유입방폭구조(o)

충전방폭구조(q)

몰드방폭구조(m)

(다) 2종 장소 : 비점화 방폭구조(n) 및 0종과 1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

6.3 접지

- (1)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거나 스프레이 시키면 정전기가 축적되므로,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설비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.
- (2) 접지한 설비는 주기적으로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규정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(3) 건조한 분말을 인화성 액체가 저장된 용기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스쿠프(Scoop)나 슈트 등을 이용하여 투입하는 경우에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를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- (4) (3)항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.
 - (가) 기계적인 이송시스템
 - (나) 이중 밸브가 설치된 호퍼시스템
 - (다) 드럼 접지클립이 있는 플라스틱에 전도체를 라이닝한 제품 사용

P-75-2011

- (라) 공기차단 및 질소 퍼징
- (마) 분체를 먼저 투입하고, 용매 투입
- (바) 분체를 습한 슬러지로 만들어 투입
- (5) 정전기 방지용 작업화, 작업복 등 착용 및 작업장의 바닥을 정전기 방지용 재질로 시공한다.

6.4 마찰 스파크

- (1)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마찰 스파크로도 점화한다.
- (2) 폭발위험분위기 장소에서는 니켈·알루미늄 합금 등으로 만들어진 공구 즉 사용 시에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, 주기적으로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3)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재질의 합금은 철재의 더러운 표면에 큰 힘으로 부딪치면 스파크를 발생하며 또한 페인트에 혼합된 알루미늄 분말도 스파크를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6.5 차량의 점화원 보호

- (1) 폭발위험분위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등과 같은 차량은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인화점이 32 ℃를 초과하는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,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취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차량에 점화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.

6.6 표면가열

- (1) 폭발위험분위기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을 이용한 라디에이터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는 방법과 같은 간접 가열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 라디에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경우, 전기 라디에이터는 방폭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P-75-2011

- (3) 표면가열 시 노출된 표면의 온도는 자연발화온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(4) 표면가열 시에는 가열 중에 생성된 증기가 액체 표면에 축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.

6.7 화기작업 및 냉간절단작업

- (1) 많은 사고는 인화성 액체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그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는 용기 에서 용접·절단과 같은 점화원에 의하여 일어난다.
- (2) 열 작업은 화기작업허가절차에 따라 작업허가를 얻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화기작업허가절차를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화기작업허가절차는 KOSHA GUIDE "안전작업 허가지침"을 참조하여 작성한다.
- (4) 화기작업은 인화성 액체 및 그 증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5) 화기작업은 지정된 관리자가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화기절단작업 대신에 냉간절단작업으로 가능하면 대체하는 것이 좋다.
- (7) 냉간절단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.
 - (가)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절단기 및 톱
 - (나) 공기압 끌
 - (다) 고압 워터 제트

6.8 흡연

- (1) 폭발위험분위기 장소에서는 절대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.
- (2) 사업장 내에는 필요한 경우 흡연지역을 지정하여 이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하여 야 한다.
- (3) 흡연장소에는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모래가 채워진 드럼통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
P-75-2011

7. 배기 및 건강상의 예방조치

7.1 배기

- (1)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는 누출된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안전한 농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배기를 하여야 한다.
- (2) 배기설비의 용량은 시간당 6회 이상 치환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배기 용량은 누출된 물질의 농도를 그 물질의 폭발하한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작업자가 출입하는 장소는 그 물질의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
- (4) 배기설비의 제어풍속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<별표 13>에서 규정하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.
- (5) 부츠, 캐비닛 및 밀페된 공간은 인화성 액체 증기의 폭발하한의 25 % 이내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배기시켜야 한다.
- (6) 배기 배출구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배기 덕트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덕트 내부에서 응축되지 않도록 설치하고, 덕 트의 낮은 곳에는 응축 액체를 드레인 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배기용 팬을 스크러버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팬은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.

7.2 건강상의 조치

- (1)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가 근로자에게 건강상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인 경우에는 그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요구하는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 샤워 및 비상 샤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8. 유지 및 보수

(1) 인화성 액체 관련된 사고는 배관시스템의 개방, 용기 출입, 화기작업 등과 같은 유

P-75-2011

지·보수 작업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.

- (2) 설비 또는 인화성 액체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외부 작업자에 의하여 유지·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.
- (3)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지·보수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.
 - (가) 가능한 위험에 대한 확인 및 평가
 - (나) 필요한 조치의 내용 확정 및 조치의 실행
 - (다) 필요한 안전장구의 준비 및 지급
 - (라) 적절하고 명확한 절차의 준비
- (4) 유지·보수 작업장소는 인화성 액체 및 그 증기는 작업 시작 전에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하며,용기 및 배관은 완벽하게 격리 차단시켜야 한다.

9. 인화성 액체의 폐기

- (1) 인화성 액체의 페기물은 안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
- (2) 페기물의 성분이 서로 섞여도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다른 공정에서 수진된 액체 폐기물은 서로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.
- (3) 액체 폐기물은 증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회수할 수 있다.
- (4) 이 경우에 니트로셀룰로오스가 함유된 액체 폐기물을 회수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10. 화재 예방

- (1) 인화성 액체를 저장·취급 설비에서 화재가 일어날 확률 및 확산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.
 - (가) 적절한 설계 및 배치
 - (나) 적절한 엔지니어링

P-75-2011

- (다) 숙련된 운전경험
- (라) 적절한 정상운전 및 비상운전 절차
- (2) 화재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(가) 대피로
 - (나) 대피로 이용방법
 - (다) 화재경보 및 대피 경보시스템
 - (라) (가)항에서 (다)항에 대한 철저한 유지 및 교육
- (3)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적절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.

11. 교육 등

- (1) 인화성 액체의 저장·취급 시에는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- (2) 현장의 모든 관리자는 저장·취급하는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정보 및 점화원의 격리 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.
- (3)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.
 - (가) 저장·취급하는 인화성 액체의 종류, 특성 및 위험성
 - (나) 안전한 인화성 액체의 취급 및 설비 운전에 필요한 절차
 - (다) 개인보호구의 사용법
 - (라)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 보고
 - (마) 공정설비에 대한 특수사항
 - (바) 비상조치절차

12. 비상조치

(1) 사고발생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상조치 계획 및 절차를 문서화하

P-75-2011

여 비치하여야 한다.

- (2) 비상조치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(가) 경보 발령
 - (나) 비상대응기관과 연락방법
 - (다) 화재 진화 및 누출확산 방지
 - (라) 설비의 비상정비
 - (마) 근로자의 안전한 대피
- (3) 비상조치절차는 KOSHA GUIDE "비상조치계획 수립지침"을 참조하여 작성한다.